

의안번호 제 103 호

논산시 출산장려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	출	자	민병춘 의원 외 3명
제를	들연물	걸일	2017. 11. 17.

논산시 출산장려 ·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제103호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7.

대표발의자 : 민병춘

공동발의자 : 백승권, 임종진, 윤예중

1. 제안이유

○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자녀양육을 지원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일부 신설(안 제2조제8호)
 - "예비맘"이란 ⇒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여성 또는 임신 전 여성을 말함
- 나.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3조)
- 다. 시장이 시행하는 출산장려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4조)
 - 출산지원금 지원
 - 임신·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출산 친화 환경조성
 - 예비맘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건강관리
 - 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
 - 다자녀 가정 지원
 - 일·가정 균형 및 저출산 인식개선
 -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라. 현행 제3조를 안 제5조로 개정함
 - 안 제5조의 제목 "지원대상의 범위"를 "지원대상"으로 개정함
 - 출생지원금 지급대상의 기준인 "출생일 기준"을 "출생일 기준으로"로 개정하고

출생아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소를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(안 제5조제1항)

마. 현행 제4조를 안 제6조로 개정함

- 안 제6조의 제목 "지원금 등"을 "지원금 기준 등"으로 개정함
-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(안 제6조제1항)

현	행	개	정
첫째아	30만원	첫째아	50만원
둘째아	50 단 전	둘째아	100만원
		셋째아	200만원
셋째아 이상	100만원	넷째아	300만원
		다섯째아 이상	500만원

-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과 예비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(안 제6조제2항)
- 제4조제3항의 "제3조제1항"을 "제5조제1항"으로 개정함
- 제4조제2항~제3항을 각각 안 제6조제3항~제4항으로 개정함

바. 현행 제5조를 안 제7조로 개정함

- 출산지원금 신청 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7조제1항)
-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함

사. 현행 제6조를 안 제8조로 개정함

- 출산지원금 신청·접수대장 "별지 제3호서식"을 "별지 제2호서식"으로 변경함(안 제8조제2호)

아. 현행 제7조를 안 제9조로 개정함

- 안 제9조의 제목 "건강관리 지원"을 "건강관리 및 출산용품 지원"으로 개정함
- 안 제9조의 본문 중 "논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제4조에 따른"을 "시장은 제6조에 따른"으로 하고, 안 제9조의 본문을 안 제9조제1항으로 함
- 임신·출산·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2항)

- 자.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로 개정함
- 차. 출산지원금 신청 서식과 신청서 접수대장 서식을 변경함
 - 별지 제1호서식 ~ 별지 제5호서식
- 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- 4. 부서 협의결과 : 관계부서 검토의견 없음
-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 검토사항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「논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

예고로 주민의견 수렴

(2) 예고기간: 2017. 11. 22. ~ 2017. 11. 26.(5일간)

(3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.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출산장려 ·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출산장려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"예비맘"이라 함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여성 또는 임신 전 여성을 말한다.
-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"지원대상의 범위"를 "지원대상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"기준"을 "기준으로"로 하며, 같은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"다만,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 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."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(책무)① 논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,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"지원금 등"을 "지원금 기준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3조제1항"을 "제5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.

-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. 넷째아 300만원.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한다.
- ②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맘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출산장려사업) 시장은 임신·출산·양육지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1. 출산지워금 지원
- 2. 임신·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출산 친화 환경조성
- 3. 예비맘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건강관리
- 4. 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
- 5. 다자녀 가정 지원
- 6. 일·가정 균형 및 저출산 인식개선
- 7.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"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이하 "신청서" 라 한다)와 "를 "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이하 "신청서" 라 한다)와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"별지 제3호서식"을 "별지 제2호서 식"으로 한다.

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"건강관리 지원"을 "건강관리 및 출산용품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"논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제4조에 따른"을 "시장은 제6조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"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·출산·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민 병 춘

[별지 제1	호서식] (제7조	도제2항제1	호 관련)						[앞면]	
			출산	서비스 통	문합처i	리 신청서			처리기간		
*	※ 색상이 어	두운 년	난은 신청인이	작성하지 이	 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	는 곳에 √표를 합니	니다 .	신청시 별	도안내	
접수번호						접수일	: 20	다문화가정 여부	□ 예	□ 아니오	
신청인	성명			등록번호 등록번호)		출산자외 관계	의	휴대전화 (집전화)			
(대리 신청인)	주소		(44)			2/1		(답단위)			
호시되	 성 명	!		(0	주민등록번: 국인등록반	호 !=\		휴대전화			
출산자 (산모)	도로명 주			(조	1독인등측반	1오)		(집전화)			
	(주민등록 주	소지)					<i>※ 출산자와 신:</i>	청인이 동일인인 -	<i>경우 "출산지</i>	<u> </u>	
세대주와 관 계		성인	명 (주민등록번: 외국인등록번		동	거여부	(세대를 달리히	주 소 하는 경우에면	반 주소 기재)	
	본인						[]아니오				
가족 사항	배우자 자					"	[]아니오				
	자						[]아니오 []아니오				
							[]아니오				
							[]아니오				
※ 출산자오	· 신청인이 등	동일인연					시설거주자는 시설:				
				(1회/일시금 지급 - 둘째아 100만원	, <u> </u>	지원금 거주기간 혹 간 :부(), 모(),기	확인] ※ 해당란에 체크		적합, 부적합	<u>ł)</u>	
				- 물째아 100년년 - 넷째아 300년원			'타(): 20 : 20	~ 20		•	
자	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(충남 논산시)		-다섯째아 이상 :	500민원	[]([]신청)째 자녀(이름 : 정인 이름 : G대상자(부, 모, o] 금 액 ([] <u></u> 운	만원 <u>]</u> 은행/계좌번호	,	
		-				예금주 = 부 또는					
		-	[] 유축기			(출산 후 1개월간 대여) ☞시전 예약제로 보건소 전화 문의 ☎ 041) 746-8064, 8065,8066					
			[]셋째아 아	상 기저귀 지원	(줄산 후	톨, 1회) ☞ ′	'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대상자 ☎ 041) 746-8063				
공	통서비스		출생자 (출생자 모두	. —			신청 내용				
양육수당 지	[원			[]] 양육수당	당(가정양육)]] 농어촌양육:	수당		
해산 급여 지 (생계주가의료		대상)		[]			!등록 주소지에서민 인 출산비용 중복신				
여성 장애인	출산비용 지원	원		[]			 인 (1~6급/출산한 청 / 해산급여와 중	/			
전기료 경감				[:] 출산가구	구 []다지	다녀(3명이상) [] 다자녀(3명	· 영이상)		
다자녀 (3명 도시 가스료 7				[]] 지역난빙	사업자명(코드):	: 고객명: 고객번호:				
급여	성 명	d d	출산자와의 관 계	대상서비스	Ē	유융기관명	계좌번호		참고사형	· 항 등	
계좌											
≫ =II I ¬ o	۲- Orshizi	I E TL '	10 71 - 7 0		41 E 7 LO 1 .	10					
		동상 V	용 가능, 그 와 								
	통지 방법 출산급부 제공	고은 시		[스(SMS): 결	싱사앙, ^서	매공기관 연닥저	등 간단한 안내				
보 사 시		ഠല പ്	ʊᆸ ⁻ 기년.				신청인(대리 신청인	!) 성명 :	년 (서	월 일 명 또는 인)	

신청인 제출서류

- 1.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2.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3.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)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

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시실증명, 농업경영체증명, 장애인증명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
참고사항

- 1. 신청하는 곳: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·동(다만,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)
- 2. 신청인(대리 신청인 포함)의 범위 : 출산자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,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

유의사항,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

- 1.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「영유아보육법」제54조제4항4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2. 해산급여(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※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)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)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.
- 3.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,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4.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5.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. ※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항목	이용 목적	보유기간
해산급여 대상여부	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	대상자격 조회 시
장애인 여부	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	대상자격 조회 시

[] 동의함

[] 동의하지 않음

6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기타 관계기관(한국전력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도시가스사업자 등)에서 다자녀 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(보유기간: 3년, 제공항목: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연락처, 고객번호,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,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)합니다. ※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]동의함

[] 동의하지 않음

- 7. 전기료, 지역난방비,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도시 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. ※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
- 8.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본인(대리인 포함)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 신청인) :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등록, 심사, 자격 확인 →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(대리신청인) 라면-동 시·군구, 보건소, 한국전력, 도시가스회사, 난방공사 등 도시가스회사, 난방공사 등

[별지 제2호서식]

출산지원금 신청・접수대장(제8조제2호 관련)

	지원대상자						신생아						
٥-١٣		부	또는 모	_					17141	신청	\$ -11-1	3-7	계좌
압면동 	성명	생년 월일	<u></u>	전화 번호	의료 급여 대상 여부	성명	출생일	출생 순위	000	그래	은행명	예금수	계좌 번호
	읍면동		부 읍면동	부 또는 모	부 또는 모	부또는 모	부또는 모	부또는 모	부또는 모	부또는 모	부또는 모	부또는 모	부또는 모

[별지 제 3호서식]

논산사랑 출산용품(임신/출산) 지원 신청・접수대장(제6조제2항 관련)

구분 연번 , 임산행복꾸리 ,출산탄생꾸리	구분	<u>.</u> 지위	행복/탄생꾸러미 대상자			- 서리.리	임신	분 만	지원	수령자 (서명	비
	지원 날짜	이름	생년 월일	주소	연락처	임신 주수	예정일	물품	(서성 또는인)	고	

[별지 제4호서식]

논산사랑 산전검사 지원 신청・접수대장(제6조제2항 관련)

구분 연번 산전사종류 •최(건정전 •기형(라스) •기형(감사)	구분 쩐래	지원	산전검사 대상자			41 →1 ~1	임신	분 만	지워	수령자	固
	날짜	이름	생년 월일	주소	연락처	임신 주수	예정일	지원 내용	수령자 (서명 또는인)	고	

[별지 제5호서식]

<u>논산사랑 예비맘 건강검진 지원 신청·접수대장(제6조제2</u>항 관련)

구분	구분	지원 날짜	건강검진 대상자			서리네	결혼	عا (ایرا) (수령자	-3
연번	구분 연번 ^예 배 건강점진		이름	생년 월일	주소	연락처	결혼 (예정)날짜	지원내용	수령자 (서명 또는 인)	비고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□ 신·구소군내미표	2
현 행 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	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~ 7.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8. "예비맘"이라 함은 결혼식 일정을
	확정한 여성 또는 임신 전 여성을
	<u>말한다.</u>
<u> <신설></u>	제3조(책무) ① 논산시장(이하 "시장"
	이라 한다)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
	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
	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
	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	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공동
	책임으로 인식하고, 저출산 문제 극
	복을 위해서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
	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<신설></u>	제4조(출산장려사업) 시장은 임신·출
	산·양육지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
	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를 위해
	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	<u>1. 출산지원금 지원</u>
	2. 임신·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
	출산 친화 환경조성
	3. 예비맘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
	원 등 건강관리
	4. 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프로그램

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) ① 지원금의 | 제5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 부터 계속하 여 시에 주소를 두고,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으로 한다.

<신설>

둘째인 경우 30만원, 셋째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, 임 산부와 영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용품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원 할 수 있다.

<신설>

	<u> </u> 원						
<u>5.</u>	다.	자녀	フ	-정 지	원		
<u>6.</u>	일	・가	·정	균형	및	저출산	인식개

선

7.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에5초(지원대상) (1)	_
<u>기준으로</u>	_
	_

다만,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 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 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금 등) ① 지원금은 첫째, 제6조(지원금 기준 등) ① 시장은 예산 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 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300 만원.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 원한다.

> ②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 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

- ② (생략)
- ③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 재 제3조제1항 요건을 갖춘 부 또 는 모에 등재된 자녀 수가 많은 가 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한다.

제5조(지원금 신청 등) ① 읍·면·동 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출산 청서"라 한다)와 구비서류를 신청 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1. (생략)
- 2.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

는 다음과 같다.

- 1. (생략)
- 2.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 여 지원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 정하고,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

며,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맘 건강검 진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 성할 수 있다.

<u>(3)</u> ((현	행과	같음)

<u>4</u>	
제5조제1항	

<u>제7조</u> (지원금 신청 등) ①	
비모	T.

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이하 "신ㅣ 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 리 신청서(이하"신청서"라 한다)와 -

- ② (현행과 같음)
- 1. (현행과 같음)

<u><삭</u>제>

제6조(지원절차) 지원금의 지원절차 제8조(지원절차)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

매월 1일 전월 지원금 신청·접수대장(별지 제3호서식)을 논산시보건소장(이하"보건소장"이라 한다)에게 보고한다.	(별지 제2호서식) (크지 제2호서식)
제7조(건강관리 지원) 논산시장(이 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4조에 따 른 지원 외에 임산부와 영아의 건 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	제9조(건강관리 및 출산용품 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
책을 강구 및 지원토록 노력하여 야 한다.	
<신설>	②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 신·출산·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 램 참가자에게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8조~제12조(생략)	제10조~제14조(현행과 같음)

[별	디제	호서	식] (저	[5조자	112ē	제호	<u> </u>			[별지	제1호/	너식]	(제 7 조	도제2항	제1호	2 관련	크)			[앞면]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생물자 발도안내					1	산 /	서비	I스 등	합처	리선	Ù청.	서			처리기간					
		접수일	<u>l</u> :20 .			다문화가정 0	부	□예	그아모	※ 색상이	이두운	난은 (<u> </u>	사 지하	[태하]에는 :	해당되는 글	문에 √표를	를 합니다.	신청시별도안내
신청인 (대리 신청인	성명		주민등 (외국인등	록번호 (록번호)		출산자와의 관계		휴대전화 (집전화)		접수번호							접수일	: 20 .	다문화가 정 여부	□ 예 □ 아니오
L'61	¹ 주소									신청인	성명		주민 록반	민등 번호			출산자 와의		휴대전화	
출산자 (산모)	성 명		(외국	민등록번호 인등록번:	<u>-</u> 호)	휴((집	개전화 전화)			(대리 신청 인)			(외국 록반	1인등			관계		(집전화)	
(==)	(2	주 주민등록 ²	소 주소지)	<i>※ 출신</i>	仄 와 신	청인이 동일인	<i>일 경우 "</i>	'출산자'라 작성 :	생략		주소			7	지미드로	비송			휴대전화	
										출산자		명		(외	주민등록 국인등	록번호)			(집전화)	
	세대주 관계	성명	주민등 (외국인등	록번호 (록번호)	5	동거여부	(세대를	주소 를 달리하는 경우	에만 주소	(산모)	도로명 ² (주민등록 ²			Ã.	<i>(출산지</i>	다와 신청	형인이 동일	일인인 경	' <i>우 "출산지</i>	ŀ"란 작성 생 [⊈]
	본인				□예	□ 아니오					세대주			주민등록	로버승				주	소
기종 기종	배우자				□예	□ 아니오					와 관 계	성	명 (외국인등	국민 <u>오</u> 록번호	(1)	동거0	부	(세대를 경우에민	물리하는 주소 기재)
사양	자				□예	□ 아니오				-	본인						[]예 [아니오		
	자				☐ 예 □ a#	□ 아니오				가족	배우자						[]예 []	아니오		
					□예	□ 아니오				사항	자						[]예 [아니오		
					□예	□ 아니오					자						[]예 [아니오		
		□출산	디인그	1													[]예 [아니오		
			시원금 시금지급))째 지녀 기기(저려	(이름 :) 화/부적합)	□금액	백 (인(부.모:이름	만원))								[]예 [-		
			30만원 30만원	□수령	인(부,모) 이름:	□ 은	행/ 계조번호							출산자'	' 란 작	성 생략	/ 해산급	여 신청인	중 시설거주
지방지 지체			상100면원	* {	<u> </u>	·령인(신생아의	부,모만	가능)		자	- 시설소	∸재지	주소를 기	재						
	논산시)					월간 대여) 🕾 041) 74	5-8064.	8065					[]출산	원금(1회/일사)	금지급)	[출산 지	1원금 거주기		○ 해당란에 이하, 3개월 후	
						· 산 후, 1회 :							-첫째 50만	원 - 물째	100만원	▶거주기	간 :부(), !	모(),기타(~20)	
		※ 섯	「째아 이상	출산지원	금 대상	자 🕾 041)	746-80	63					-셋째200만	원 넷째;	300만원 -	▶신생아		: 20	· · · ·	
																[]();;	내지 ቱ(0름:)	[]금액(면원
			아기이	름			신청 니	내용			자치단체 체 급부		-다섯째아	상 :500만원	Ī	[] 신청			PPI 관계	sthetic L=
		□ 어린이집 영유아(0~2세) □ 어린이집 다. □ 양육수당(기정양육) □ 농이촌양육수				어린이집 다문화 농어촌양육수당	코육료		(충남 논산시)						상자(부, 모, 이카) 이름 [] 은행/계좌번호 금주 = 부 또는 모, 이기					
일반		유물의		_		. 100 1/ 영유이(0~2세 (기정양육)		어린이집 다문화									#알나다이 조시전 예약제로 보건소 전화 문의			
	13°	양육수당						농어촌양육수당							© 041) 746-8064, 8065,8066					
					에 생수당	영유이(0~2세 (기정양육)) =	어린이집 다문화 농어촌양육수당	로 육료				[]섯째o	아이상기저	귀 지워	(출산 후	호, 1회)	☞ 셋째아	0상 출산자	원금 대상자
													. ,,,,,		.,			æ 04	1) 746–80	63
디지네	(3명 이		요금 경감(고 '나오금 경김		[전명 :	, 고객번호	: 2백명 :) , 고객번호	:	공	통서비스		출생자 0				신	청 내용		
	5/		- 방요금 경김				고객명 :			양육수당	낭 지원] 양육수	 당(기정영	 양육)		[] 농	거촌양육 수 당
	_									해산 급(여 지원 의료급여수	ا بر ت		[]] 해신급	여(출산제	시의 주민등	록 주소자	에서만 신청	가능)
급부계 : (지역난	방 성 5	출산지	나와의 관계	대상	스비사	금융기관명	계좌	번호	비고(사유)	여성 장이	날)								중복신청 불 축시한 경위	
요금경 신청시	압									지원	실			ļ.,	. — —				화 중복 신	_,
류방지· 장제오										전기료 :		1)		[]] 출산가	구 [] 다자	f(3명이상)	[][(3명이상)
결과 통	지 방법	□문자	비사 지시메	스(SMS),또	는 전화	: 결정시항, 저	공기관 연	역처 등 긴단한	안내		스료 경감			[]] 지역난		(코드):	고	백명 :	고객번호:
위와	같이 출	L 신급부 제:	공을 신청합	니다. ,	.lネჃol/rl	H리 신청인) 성	10d ·	20 년.	네명 월는 연		성 명	병	출산자와 관 :	h의 계 대상	서비스	금융기	기관명	계좌	번호	참고사항 등
논산	시장구	하		,	1.9 17(4	IH 282) c		(/-	10 +	급여 계좌				- "						
		기족관계등	록담당자 확	2	양육수동	등 담당자 공	람흑 인	수신	여부 확인											
凝點	나] 기족관계시: □ 다지녀 또			날짜:		□ 법정소	Y-In-I-	※ 해선	산급여는	압류병	방지통장 사	용 가능,	그외	서비스는	일반통정	낭만 사용		
	UT2	:0-7\18'l	()	째		(급: 날짜: 성명: 직급:		□ 보건소 □ 한국전력공	성명: }사 성명:		통지 방법					성사항,	제공기관	연락처 등	등 간단한 1	안내
	20 소속	년 월	일_	ı-	l 명 사	명 성명:	드 인:	□ 충남도시기		위와 7	같이 출신	급부	제공을 신		인(대리 ·	_ 신청이)	성명 :		년 (서명	월 일 명 또는 인)
처리지	소속 성명	:	실 일 직급: (서명 또는	인) 인			는 건:	□ 지역난방공	가 싱벙:	논 산 /	시 장 귀	하		787	-(네니 '	. (G 킨)	00.		(^15	, <u>+</u>
※ 년 2	※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, 지침 등의 개정·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; 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'(재활용품)									명칭 등은 g/m²]또는			칠 등의	l 개정·변	경에 따	라 변경하	여 사용한다			

[뒷면]

신청 시 제출 서류(공통)	추가 제출 서류 (해당되는 서류만 제출)
1. 신청사(발지 제 호 서식) 2. 신청자(대) 신청자) 신분증 •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 운전면허증,또는 여권 등	1.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신자 신분증 2. 계존번호가 표기된 등장사본 1위현급자원 해당자에 한함) ※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,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※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. 기쪽관계증명서(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)
신청하는 곳 출생	자주민등록주소지 읍면-동 주민센터

신청인(대리 신청인 포함)의 범위

출신자(신도) 본인, 출신자(신도)의 배우자, 출신자(신도)의 작계가 (작출신자(신도) 친부모 및 시부모)

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·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

- 1. 부장수급으로 적퇴된 경우 「영유이보육법」제64조제(3행호, 「의료급) 법」제55조제(항 등 관련법) 의거 장역, 발급, 구류 또는 괴료에 처합나다
- 2. 신청인은 이건 업무차리와 관람이 「전짜정부법」 제환조제 형에 따른 행정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유원이 기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,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화에 동약하다.(※ 꾸민등록등 최본, 기존관계정에,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, 건강보험급부확인서, 모자들기 부 등본, 건물들기 부 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장사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유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사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)

음의 대학목 의

3.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및 지방사다단체, 기타 관례가 III 한국전국당사, 지역난방시업자, 모차가 보다당하는 에서 확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통 경공사비스 등의 산물 대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을 상기 간단 개인적 보 위탁 및 제자재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안합나다 (※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불반호, 성명, 주소, 연락자, 지역장보, 경공사비스차무에 필요한 고백번호 등을 포함하며, 상세 내용은 사비스별 개인정보이 용활용동의 사식 참조

□동화 교육 교육 교육 □

- 4. 전기료, 도시키나오금, 지역보임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키나호사, 지역보임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 감 적용이 됨-다.
- * 자꾸는 방문 공급자 및 공급자약에 따라 감면이 해당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신하여 **Pash
- 5. 출신급여 제공(변경)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

본인(대리인 포함)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 20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 신청인) :_____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	처리절	차	
신청서직성 접수	등록 심사 자격확인].	선택지및급부제공
신청인 읍면동장 (대리신청인) 읍면동장	읍면동, 시군구, 보간소, 한잔력, 가당사 년당사등		읍면동, 시군구, 한턴 <i>등</i> 보육료양육바이르비, 전 한 면 조감등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*(재활용품)

「뒤쪽

신청인 제출서류

- 1.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2.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3.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)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

착고사항

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농업검영체증명, 장애인증명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
- 1. 신청하는 곳 :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(다만, 해산급여는 출산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
- 2. 신청인(대리 신청인 포함)의 범위 : 출산자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,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

유 의 사 항 ,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이 용 ·제 공 동 의 서
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「영유아보육법」제54조제4항4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2. 해산급여(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※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)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시업(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)과 중복신청이 불기합니다.
-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,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 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4.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 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5.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. ※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.

항목	이용 목적	보유기간
해신급여 대상여부	저소득층해신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	대상지격 조회 시
징애인 여부	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	대상자격 조회 시

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6.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기타 관계기관(한국전력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도시가스 사업자 등)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 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삼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(보유기간: 3년, 제공항목: 성명, 주소, 주민등 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연락처, 고객번호,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,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 이지 참조)합니다. **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 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- 7. 전기료, 지역난방비,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, 한 국지역난방공사,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.
 - ※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
- 8.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.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본인(대리인 포함)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^회 인합니다.

> 20 년 월 일 신청인(대리 신청인) :

 처리절차

 신청서 작성
 접수
 등록, 심사, 자격 확인
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

 신청인 (대리신청인)
 나군구, 보건소, 한국전력, 도시가스회사, 난방공사 등
 사군구, 보건소, 한국전력, 도시가스회사, 난방공사 등

(서명 또는 인)

【별지 제3호서식】 [별지 제2호서식] 출산지원금 신청ㆍ접수대장(제6조제2호 관련) 출산지원금 신청ㆍ접수대장(제8조제2호 관련) 지원대상자 신생아 지원대상자 신생아 부또는 모 신청일 신청 은행명 예금주 연변 불면 부또는 모 연변 불면 신청일 신청 은행명 예금주 계좌 의료 전화 급여 번호 대상 여부 성명 출생 출생 일 순위 의료 전화 급여 번호 대상 여부 성명 생년 월일 성명 생년 월일 [별지 제3호서식] 논산시랑 출산용품(임신/출산) 지원 신청·접수대장(제 6조제 2항 관련) 행복/탄생꾸러 미 대상자 수령자 (서명 또는 인) 분민 예일 이름 생년 주소 [별지 제4호서식] 논산사랑 신전검사 지원 신청・접수대장(제 6조제 2항 관련) 산전검사 대상자 구분 산화(종) 연락 처 비 고 연 번 지원 날짜 임신 분민 지원 주수 예일 물품 이름 생년 월일 주소

[별지 제5호서식]

는산탕예마건강점진 지원신청·접수대장(제조제항관련

구 0 연번 문 건 2	구분 예비 맘 건강	지워	건강검진 대상자			여라	결혼 (예	지원	수령자 (서명	
	맘 건강 검진	지원 날짜	이듬	생년 월일	주소	연락 처	정) 날짜	지원 내용	또는 인)	비고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「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 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, 태아 및 영유 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,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·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, 추산,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(생략)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적으로 지원한다.
- 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 - 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 - 3. 안정된 주거생활
 - 4. 태아 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 - 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 - 6. 음란물·유흥가·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
 - 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 - 8.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 - 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, 지원할 수 있는 관련사항

제23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 ① ~ ② (생략)
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, 제도 및 가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「모자보건법」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, 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「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적용기관) 이 규정은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처리하는 시·군· 구, 읍면동 및 시·군·구 보건소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출산서비스 통합처리"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자 (산모)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·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(이하"통합처리"라 한다.)
- 2. "임신 출산서비스 사전 안내"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시까지 제공하는 임신, 출산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.(이하 "사전안내"라 한다.)
- 3. "임신서비스 통합처리"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시까지 제공하는 임신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·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(이하 "통합처리"라 한다.)

참고 2 他 시·군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

시·군명		7 16년 초세의	1인당 지원 기준(단위:천원)							
\ \A\·t		출생아 수	첫째아	첫째아 둘째아		넷째아	다섯째아			
천	안	6,021	없음	없음	1,000	1,000	1,000			
고	ス	547	1 200	1 500	3,000	5,000	5,000			
0	Τ	347	1,200	1,500	셋	째이후 분할지	급			
上	려	627	300	500	1,000	2,000	3,000			
工	· 0	027	300	300	1,000	넷째이후	분할지급			
아	산	3,441	없음	500	1,000	2,000	2,000			
서	사	1,564	300	300	2,000	5,000	10,000			
	ีน	1,304	300	300	셋	째이후 분할지	급			
	현행		300	300	1,000	1,000	1,000			
논산	개정	713	500	1,000	2,000	3,000	5,000			
계	룡	371	500	1,000	1,500	3,000	3,000			
당	진	1,717	300	500	2,000	5,000	10,000			
금	산	289	500	1,300	2,000	2,000	2,000			
ㅂ	서	202	F00	2,000	5,000	10,000	10,000			
부	~ 	292	500		둘째 이후	이후 분할지급				
서	천	226	1,000	1,500	4,800	8,600	15,400			
<u>-</u> 1	۸۱	10-	1 000		5,000	10,000	20,000			
정 	양	135	1,000	2,000	셋째이후 년	분할지급 및 임선	신축하금500			
홍	섯	691	없음	500	1,000	3,000	5,000			
·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<u>ы</u> п		육아지원금	: 3째이후 15만	원(3-27개월)			
예	산	316	500	1,000	3,000	4,000	5,000			
			-	,		· 셋째이후 분	할지급 「			
태	안	352	500	1,000	2,000	2,000	2,000			

참고 3 他 시·군 출산용품 등 지원 현황

시·군명	조 례 명	출산용품 지원	비고
논산시	논산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	- 예산의 범위 내	
공주시	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	-10만원 상당 공주사랑 상품권 -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자부담 90%	
보령시	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	- 예산 범위 내 -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자부담 45만원 (표준/10일)	
서산시	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 조례	-양육수당 월10만원(24개월까지)	
계룡시	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	- 예산범위 내 - 1인당 약 10~15만원 물품	
당진시	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	- 3만원 상당 상품권	
부여군	부여군 출산지원 조례	- 소고기,미역,내복 등 - 출산축하상품권 1인 10만원 - 임산부 분만교통비지원 10만원	
서천군	서천시 출산장려 조례	- 9만원 상당(출산용품)	
청양군	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	- 50만원 이내 (임신축하금) - 임신관련 의료비(무료)	
홍성군	홍성군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	- 출산축하금(3년간/월3만원 적립) - 출산용품, 진료비 감면	
은평구 (서울)	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	- 15만원 상당 · 상품권(출산용품 교환권)	
충북 김천시	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	- 출산용품 1인 5만원상당 - 신생아건강보험 월3만원 - 난임시술 자부담금 지원 - 각종 검사 비용	
경북 상주군	상주군 출산·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	 출산기념품 1인 10만원 첫임신 축하금 1인 10만원 출산축하금 1인 30만원 첫돌맞이 축하금 20만원 아기건강보험 월 3만원(36개월) 	
해남군 (전남)	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	-출산축하물품(약7만원) -임신관련 진료비지원(16만원) 초음파검진권(6만),기형아검진권(7만) -공공산후조리원(2주)154만원	

[※] 충남지역 15개 지역 중 10개 지역 해당, 기타 지역은 산모도우미 자부담, 양육비 등으로 지원

참고 4

他 **시·군 다자녀가정 지원 현황**

시·군명	조 례 명	다자녀 가정 지원	山고
논산시	논산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	- 물품(다자녀 기저귀 5팩) - 1인당 12만원 상당	
천안시	천안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	- 출소축하금(전강관리) 30만원	
아산시	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	-산모·신생이건강관리 자부담 지원 (셋째아이상 가정/ 평균소득 50%이내)	
공주시	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	- 산모, 신생아, 도우미 지워(전체) (본인부담금/단태아기준 24만원~39만원)	
서산시	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	-셋째아 이상(만3세 까지) 1인 월 8만원	
계룡시	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	- 예산범위 내 - 1인당 약 10만원 출산용품	
부여군	부여군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	- 다태아 출산가정 100만원 지원 - 산모, 신생아 도우미 지원(전체) (본인부담금/24만원-30만원까지 일부지원)	
서천군	서천군 출산과 양육지원 조례	- 양육지원금 지원(만3세까지) ·셋째: 월 5만원, ·넷째: 월 10만원, ·다섯째: 월 15만원, ·여섯째 이후: 월 20만원	
청양군	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	- 3째아 이상 양육비 :월 10만원 지원 - 3째아이상 임신축하금: 50만원등 - 산모, 신생아 도우미 지원(셋째~) (본인부담금/단태아기준 15만원~35만원)	
홍성군	홍성군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	- 출신축하금(3년간/월 3만원 적립) - 출산용품, 진료비 감면	
예산군	예산군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	- 3째아 이상 고등수업료지원 - 3째이상 대학입학 축하금	
인천시 연수구	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	- 2째아이 출산용품비 100만원	
연구구	상학시원 소네	- 3째아이 아동양육비 연240만원	
해남군 (전남)	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	- 출산지원금 +양육지원금 분할지원 • 첫째 300만원(일시30,매월15만원씩18회) • 둘째 350만원(일시80,매월15만원씩18회) • 셋째600만원(일시120,매월20만원씩24회) • 넷째이후720만원(일시120,매월25만원씩24회)	1인 180만원
(包百)		- 1인 3만원이하 5년 지원 - 10년보장,만기환급금100 만원 지급(신생아 건강보험)	

[※] 충남지역 15개 지역 중 11개 지역 해당, 나머지 지역은 모든 신생아 적용으로 다자녀와 구분 없음.

참고 5 他 시·군 산전검사 등 지원 현황

시·군명	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	임산부 산전검사 지원	비고
천안시	- 무료 풍진검사(천안의료원)	- 임산부 무료 초기검사(6종)	
아산시	-	-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	
공주시	- 신혼부부 무료 검진 (남자 7만원, 여성 20만원)외래 - 무료 풍진검사	- 신혼부부 무료 검진 (남자 7만원, 여성 20만원)외래 - 무료 풍진검사 - 태아이상 선별검사 -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자부담금 90%지원(중위 100%미만)	
보령시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(보건소)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(보건소)	
논산시	-	- 임산부 초음파 1회(2만5천원)	
계룡시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(보건소)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- 초음파 쿠폰(2회) 5만원 상당	
부여군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(혈액검사 등 23종)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(혈액검사 등 23종)	
		- 태아이상 선별검사 쿠폰(5회) -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자부담금	
서천군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(풍진 등 7종)	- 무료 건강검진, 풍진예방접종 (풍진 등 7종)	
		- 태아이상 선별검사 쿠폰(5회) - 기형아양수검사·초음파 쿠폰	
청양군	- 무료 풍진검사(청양의료원)	- 산전검사(질초음파,모성검사,풍진 검사 등	
		-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자부담금 지원	
홍성군	- 무료 풍진검사(홍성의료원)	- 산전검사(질초음파,모성검사,풍진 검사 등	
		- 공공산후조리원 운영	
예산군	-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- 풍진검사	- 임산부 산전기초검사 - 초음파,풍진,태아 기형아검사 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	
태안군	- 무료 풍진검사(태안의료원)	- 산전검사(질초음파,모성검사,풍진 검사 등	

[※] 충남지역 15개 모든 지역 시행

참고 6



>>> 임산부 주수별 산전 필수검사 현황

,		
주	수	검 사 내 용
10주~		○ 혈액검사(혈액형, Rh인자, 빈혈여부, B형간염항체검사, 간기능 검사, 매독,에이즈) ○ 소변검사(임신여부 그 외 임신중독증,당뇨, 요도염,신장병 등 진단에 도움), 치과검진(임신 중 치주질환에 이환된 경우 조산 위험)
15주~		기장의 접시도 의료 6 구교, 현생한 결토 6 현실업기(6의 현)
16주~		○ 양수검사(병의원)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이거나 유전질환의 위험이 있거나, 기형아 검사 및 초음파 소견이 정상이 아닌 경우 염색체 이상등 확인하기 위한 검사
26주~	~28주	○ 입체 초음파(병의원) 태아의 외형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형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
34주~	~38주	필요한 심사들 시청야의 표한 기둥 역부 시표
기타	검사	○ 태아의 심음전자 감시장치를 이용한 검사, 골반계측, 세포진 검사 등이 있으며 선천적 기형의 위험이 있을 때는 융모막 융모생검(임신9주~10주)을 하여 염색체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음

○ 태아 기형아 검사(15 ~ 20주) 비교 /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

구 분	트리플(Triple)	∗쿼드(quad)검사	비고
검사항목	태아단백(ATP) 성선자극호르몬(HCG) 비포합형에스티리올(UE₃)	태아단백(ATP) 성선자극호르몬(HCG) 비포합형에스티리올(UE₃) <mark>인히빈 A(inhibin-A</mark>)	Normal Edg. 1 BANA-DOOR IN EST GARCOOM HE ENGINE THE STATE OF T
대상질환	다운증후군 신경관결혼	다운증후군 신경관결혼	
발견효율성	다운증후군: 63~65%	다운증후군: 63~65%	
검사비용	3만5천원	1만원	

※기형아 검사: 다운증후군 등 아이를 출생할 위험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태아 이상 유무를 검사

- **기형아 검사방법**(산모 혈액으로)
 - ① 1차 기형아 검사(/트리플 검사:3가지 지표 사용), ② 2차 기형아 검사/쿼드검사:4가지 지표 사용)
 - ③ 양수검사: ①,②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시행
- **양수검사**: 산모의 배를 바늘로 찔러 양수를 뽑아내고, 양수 세포를 배양하여 태아 염색체를 알아보는 검사((양수검사는 기형아 검사에서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실제 이상이 있는 지를 확진하는 검사) 다운증후군 등의 아이를 출생할 위험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태아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계산하고 추가검사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선별검사
- **※ 혈청검사(양성) 후 다운증후군 의심(양수검사)**: 5% 미만 에서 다운증후군 같은 염색체 질환 발생,

